

성운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교수 초빙

1.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

<전임교원>

학부 및 학과	채용분야	채용인원			비 고
		전임교원	비정년트랙 강의전담 교원	비정년트랙 산학협력 중점교원	
미래휴먼 사회복지학부	사회복지학	1 명			해당분야 산업체경력자 (5년 이상)우대
라이프융합학부	사회복지학	1 명			

<겸임교원>

학부 및 학과	채용분야	채용인원	비 고
미래휴먼 사회복지학부	사회복지학	1 명	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및 현직자
	사회복지(상담학)	1 명	
	사회복지 (청소년복지)	1 명	
라이프융합학부	사회복지학	2 명	
AI말산업학부	승마	1 명	

2. 지원자격

- 고등교육법 교원 자격 기준 및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
- 임용일 : 2025. 08. 25.

<전임교원> / <강의전담교원>

가. 공통 자격 요건

- 1)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,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소지자
- 2) 학사학위 취득 후 **4년 이상**의 초빙분야와 일치 또는 유사 연구경력과 교육 경력 소지자

나. 학과별 자격 요건

- 1)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
- 2) 라이프융합학부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

<산학협력중점교원>

가. 공통 자격 요건

- 1) 초빙분야 관련 **산업체 경력 10년 이상**인 자
 - 산업체 경력 : 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간 등에서 지원하는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함.
 - 「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

[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]

-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
-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군경력 포함)에서 당해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-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-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연계될 수 있는 경우

나. 학과별 자격 요건

- 1)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: 전임교원과 동일
- 2) 라이프융합학부 : 전임교원과 동일

<검임교원>

가. 공통 자격 요건

- 1)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(본직)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
- 2) 원소속(본직)기관에서 **정규직원으로 상시근무**하고 있는 현직자로서 **3년 이상 경력자**
※ 인정제외자 : 본직기관의 비상근 근무자,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·전임연구원
- 3) 학사학위 취득 후 **4년 이상**의 초빙분야와 일치 또는 유사 연구경력과 교육 경력 소지자
- 4) 검임교원제도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·실험·실기 등 산업체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자
- 5) 소속기관장의 임용동의(검직허가)가 가능한 자

나. 학과별 자격 요건

- 1)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
 - 사회복지학 전공 :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우대
 - 사회복지(상담) 전공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- ① 청소년상담사 1급 소지자
 - ② 직업상담사 및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
 - 사회복지(청소년복지) 전공 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- ① 청소년 지도사 검정과목에 대한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자
(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,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으로 인정)
 - ②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 및 관련 기관 업무 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있는
1급 이상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
- 2) 라이프융합학부 : 전임교원과 동일
- 3) AI말산업학부 : 경기지도사(전문스포츠지도사) 자격증 소지자 우대

3. 심사절차

-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함.

가. 1단계(기초심사) : 지원자에 대한 기본사항 및 전공 적합 심사

나. 2단계(전공심사) : 1단계 합격자의 학력, 경력, 산학협력 실적 심사

다. 3단계(면접심사) : 학생지도 능력, 강의능력, 발전 가능성, 산학협력 계획 등 심사

4. 제출서류

<전임교원> / <강의전담교원>

가. 지원자 이력(기본정보, 학력, 자격, 경력, 강의경력)

1) 학력 : 졸업 및 성적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부 첨부

- 외국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취득 신고필증을 첨부

※ **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**

2) 자격 : 자격증 사본 각 1부 첨부

3) 경력/강의경력 :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첨부

-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
-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

-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

(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

※ **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**

나. 자기소개서

다. 연구실적 내역 : 최근 4년간 200% 이상의 연구실적물

- 연구논문, 저서/역서, 특허실적, 전시/공연, 외부연구비 수주실적,
학위논문 실적 관련 서류

- 학위논문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음

① 저자 수 필히 기재

② 연구실적은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하며, 서류 접수 시 게재 논문 제목, 공저자이름, 학술지명, 게재날짜, 페이지 등이 포함된 내역을 아래 방법으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.

■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ISI Web of Science 홈페이지에서 출력

■ 한국연구재단 등재(등재후보 포함)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

(<http://www.kci.go.kr>), 국회도서관(<http://www.nanet.go.kr>),

DBpia(<http://www.dbpia.co.kr>), KISS(<http://www.search.koreansudies.net>),

KERIS (<http://www.riss.kr>) 에서 논문게재를 확인하여 검색화면 출력

※ 최종합격자는 제출 별쇄본에 대한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출해야한다.

라. 추가 제출자료 : 본 대학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파일 제출

1) 연수/상별 내역

2) 임용 후 수행할 연구계획서/강의계획서

- 전임교원 : 임용 후 수행할 연구계획서 제출

- 강의전담교원 : 임용 후 수행할 강의계획서 제출

<산학협력중점교원>

가. 지원자 이력(기본정보, 학력, 자격, 경력, 강의경력)

1) 학력 : 졸업 및 성적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부 첨부

- 외국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취득 신고필증을 첨부

※ **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**

2) 자격 : 자격증 사본 각 1부 첨부

3) 경력/강의경력 :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첨부

-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
-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

-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

(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

※ **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**

나. 자기소개서

다. 연구실적 내역 : 최근 4년간 200% 이상의 연구실적물

- 연구논문, 저서/역서, 특허실적, 전시/공연, 외부연구비 수주실적, 학위논문 실적 관련 서류
- 학위논문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음

① 저자 수 필히 기재

② 연구실적은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하며, 서류 접수 시 게재 논문 제목, 공저자이름, 학술지명, 게재날짜, 페이지 등이 포함된 내역을 아래 방법으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.

■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ISI Web of Science 홈페이지에서 출력

■ 한국연구재단 등재(등재후보 포함)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

(<http://www.kci.go.kr>), 국회도서관(<http://www.nanet.go.kr>),

DBpia(<http://www.dbpia.co.kr>), KISS(<http://www.search.koreansudies.net>),

KERIS (<http://www.riss.kr>) 에서 논문게재를 확인하여 검색화면 출력

※ 최종합격자는 제출 별쇄본에 대한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출해야한다.

라. 추가 제출자료 : 본 대학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파일 제출

1) 산학협력 실적목록

2) 임용 후 수행할 산학협력 활동계획서

<검임교원>

가. 지원자 이력(기본정보, 학력, 자격, 경력, 강의경력)

1) 학력 : 졸업 및 성적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부 첨부

- 외국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취득 신고필증을 첨부

※ **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**

2) 자격 : 자격증 사본 각 1부 첨부

3) 경력/강의경력 :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첨부

-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

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하며 현직 뿐 아니라 전직 포함 직장가입자 내역 확인 가능하게 출력)

-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

-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

(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

※ **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**

나. 자기소개서

다. 연구실적 내역 : 최근 4년간 200% 이상의 연구실적물

- 연구논문, 저서/역서, 특허실적, 전시/공연, 외부연구비 수주실적, 학위논문 실적 관련 서류

- 학위논문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음

① 저자 수 필히 기재

② 연구실적은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하며, 서류 접수 시 게재 논문 제목, 공저자이름, 학술지명, 게재날짜, 페이지 등이 포함된 내역을 아래 방법으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.

■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ISI Web of Science 홈페이지에서 출력

■ 한국연구재단 등재(등재후보 포함)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

(<http://www.kci.go.kr>), 국회도서관(<http://www.nanet.go.kr>),

DBpia(<http://www.dbpia.co.kr>), KISS(<http://www.search.koreansudies.net>),

KERIS (<http://www.riss.kr>) 에서 논문게재를 확인하여 검색화면 출력

※ 최종합격자는 제출 별쇄본에 대한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출해야한다.

라. 추가 제출자료 : 본 대학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파일 제출

1) 소속 기관장 동의서

5. 임용지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

가. 접수기간 : 2025. 07. 08.(화) ~ 07. 23.(수) 23:59

나. 접수방법 : 성운대학교 교원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

※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'교원 초빙 지원자 매뉴얼'을 참고하여 접수

다. 접 수 처 : <https://prof.sw.ac.kr>

6. 결과통지

우리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합격자에 한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함

7. 기타 유의사항

가.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

나. 제출서류는 임용후보자로 통지된 직후 원본을 제출하여 우리 대학에서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다. 외국어로 작성된 각종 서류는 본인 날인의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

라. **각종 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**

마. 채용 후에도 응모자격이나 연구실적 등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원으로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

바. **계약기간은 1년으로 임용하며, 평가를 통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**

사. 심사결과는 **합격자에 한해** 개별 통지함

(단, 초빙 전공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음)

아. 강의전담교원은 겸임교원, 강사가 아니므로 지원에 유의 바람

자.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임용이 불가 또는 취소되니 지원에 유의 바람

[임용취소 결격사유_교육공무원법 제33조]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차.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기획처(☎ 054-330-8869)로 문의 바람

2025. 07. 07.

성운대학교 총장